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214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삼호가든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9. 13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삼호가든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-20호 외 4필지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7,429.5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삼호가든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채석찬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에펠410(서초동 이곡리1사)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8. 9. 7.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 - 1) 대지면적 : 27,429.5㎡
 - 2) 지하3층/지상35층, 아파트 8개동(764세대), 부대·복리시설
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및 보류지 해당없음)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				
	계	60㎡ 이하	60㎡ 초과 ~ 85㎡ 이하	85㎡ 초과 ~ 115㎡ 이하	115㎡ 초과
계	764	275	343	106	40
토지등소유자	418	25	267	102	24
일반분양	216	120	76	4	16
소형주택(임대)	130	130	0	0	0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철거완료

6. 주요변경내용 : 건립세대수 증가, 수압지출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변경 등
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5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